

서울특별시마포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9. 7.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1. 8. 27.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2021. 8. 31.

다. 상정일자

- 제250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21. 9. 7.)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자치행정과장 김종오】

가. 제안이유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의 전면 시행으로 행정안전부 훈령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 수립기준」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으로 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의 “중·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로 변경(안 제1조)
-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에서

“새마을사업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50퍼센트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안 제3조)

- 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안 제5조)
- 장학금 지급액은“공납금 전액”에서“학기별 최대 90만 원까지”로 변경(안 제7조)
- 장학기금 확보 규정 삭제(안 제11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유준상)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등 전 학년의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행정안전부 훈령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을 정비하여 현실성 있는 장학금 지급으로 사회단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의“중·고등학교 자녀”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로 변경하는 내용임.
- (안 제3조)에는“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에서“새마을사업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내인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의 대상자를 규정하는 내용임.
- (안 제5조)에는 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변경함.
- (안 제7조)에는 장학금 지급액은“공납금 전액”에서“학기별 최대 90만 원 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임.
- (안 제11조)에는 장학기금 확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임.

○ 검토의견으로는

본 일부개정안은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자치구가 장학금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 개정 시행 중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구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자긍심 고취의 목적으로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행정안전부 훈령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사항을 반영 하여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을 현행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법령에 따른 변경 사항으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5조(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구지회장이 선정위원회의 구성하는 내용은 투명성 제고와 특혜시비의 논란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천과 선정은 구분하고 구청장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 특정단체만의 장학금 지급의 형평성 문제점을 감안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지역단체의 봉사활동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새마을지도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로 개선한 점은 합리적인 개정내용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없 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수정안 불임)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 음

8. 기 타: 없 음

【참고자료】

새마을장학금 지급 관련 조례 개정 현황

<2021. 8. 23.(월)>

연번	자 치 구	선 정 기 준	선정시기	인원	선정방식	장학금액	개 정 일	예산(천원)	인원(명)
0	마 포 구	·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내	학기시작 30일전까지	7%	선정위원회	예산범위 90만원까지	입법예고 5.27~6.16.	44,670	17
1	종 로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우등(재적 정원 50/100 이내), 특기 장학금	학기개시후 20일 이내	7%	선정위원회	전액	`18. 5. 25.	28,164	30
2	중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유공자자녀 제외)대상 · 유공상훈훈격, 학교성적, 특기관련 입상성적 등 점수로 환산 우선순위선정 ※ 국민권익위원회 안 준용	학기시작일로 부터 20일 이내	7%	구지회장이 구청장과의 협의	중30 고50 대100	`21.1.11.	92,400	60
3	용 산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 유공, 특기 장학금	규정없음	7%	구지회장이 구청장과의 협의	고50 대100	`21. 5. 14.	56,328	30
4	성 동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장학금	매학기개시 후30일 이내	7%	구지회장이 학교장,총장 구청장과의 협의	수업료	`17. 7. 13.	44,000	20
5	광 진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우등(재적 정원 50/100 이내), 특기 장학금	학기개시후 20일 이내	7%	선정협의회	예산의 범위	`20.12.28.	54,000	30
6	중 랑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 자녀	규정없음	7%	지회장이 구청장과의 협의	수업료	`20.11.19.	56,290	미정
7	성 북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우등(재적 정원 50/100 이내), 특기 장학금	규정없음	7%	구지회장이 구청장과의 협의	중30 고50 대80	`20.12.31.	18,680	40
8	강 북 구	·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유공, 우등(재적 정원 20/100 이내), 특기 장학금(기존 조례 유지) · 고등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사고, 특목고만 해 당	매학기개시 후30일 이내	예산 범위	구청장이 선정	공납금 전액 또는 일부	`20.12.31.	18,750	미정
9	노 원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 지도자 의 대학생 자녀 및 유자녀	학기개시후 20일 이내	7%	구지회장이 구청장과의 협의	예산의 범위	`21.3.18.	-	-
10	서대문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우등, 특기 장학금	매학년 초	예산 범위	구청장이 구지회장과 협의	고50 대100	`20.12.30.	10,000	미정

연번	자 치 구	선 정 기 준	선정시기	인원	선정방식	장학금액	개 정 일	예산(천원)	인원(명)
11	강 서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일반 장학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규정없음	7%	구청장은 지급	예산범위	`21.3.26.	75,104	80
12	구 로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학기개시후 20일 이내	7%	구지회장이 구청장과협의	고·전액 대·예산범위	`20. 8. 6.	38,000	38
13	금 천 구	· 유공자장학금(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특기생장학금	매학기초	예산 범위	구지회장이 구청장과협의	수업료	`20. 3. 25.	36,270	25
14	영등포구	· 구협의회장·구부녀회장·구문고지부회장이 공동으로 구지회장에게 추천	학기개시후 20일 이내	예산 범위	구지회장이 구청장과협의	공납금 전액	`19.10.17.	18,764	10
15	동 작 구	·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특기 장학금	학기개시후 20일 이내	7%	구지회장이 구청장과협의	예산범위	`21. 1. 1.	16,320	24
16	관 악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특기 장학금 (21개동 각 2명씩 선정)	학기개시후 20일 이내	7%	구지회장이 구청장과협의	고50 대100	`20.12.31.	42,000	42
17	서 초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규정없음	7%	구지회장이 구청장과협의	학비전액 (고등150%)	`21. 2. 3.	90,000	36
18	강 남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우등, 특기 장학금	학기개시후 20일 이내	7%	구청장이 구지회장과협의	고45 대90	`20.12.31.	27,000	15
19	송 파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우등, 특기 장학금	학기개시후 20일 이내	7%	구지회장이 구청장과협의	예산범위	`20.12.24.	54,000	27
20	강 동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우등, 특기 장학금	규정없음	예산 범위	구청장이 추천받아선정	예산범위	`21. 5. 26.	28,800	18
1	동대문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경력1년이상 요하지 않음), 우등(재적 정원 50/100 이내), 특기 장학금							
2	도 봉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3	은 평 구	·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남·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유공·우등·특기장학금)		-					
4	양 천 구	·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 유공, 특기 장학금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8. 4.]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기준경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연도 기준경비를 해마다 7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기준경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7. 30., 2014. 11. 19., 2017. 7. 26.〉

1. 업무추진비
2. 지방보조금
3. 지방의회 관련 경비 중 국외여비(國外旅費),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기준경비의 범위에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1. 9. 30.]

□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용기준

○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

- 고교 무상교육에 따라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중·고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관련 사항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301 일반 보전금	02.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가. 통·리장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통·리장의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나. 새마을장학금지급 조례에 의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 적용대상 : 조례규정에 의거 새마을지도자 자녀 중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2) 지급액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의한 기준 공납금 다.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대여장학금은 제외) - 통·리장 자녀, 새마을지도자 자녀 등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등에 대해 <u>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u>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고시에 따른 기준 공납금 참고)